

공고 제 12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1년 03월 08일

나포면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 조치사항 직권 조치일자
이 *구	이 *구 1966-03-16	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	직권말소 2021-03-08